|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선박톤세**  **잠행조례**  국무원령 제610호  《중화인민공화국 선박톤세 잠행조례》는 2011년 11월 23일 국무원 제 182차 상무회의를 통과, 현재 공포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자바오(温家宝)  2011년 12월 5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 항구에서 경내 항구로 들어온 선박(이하 “과세대상선박”)은 본 조례에 따라 선박톤세(이하 “톤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톤세의 세목, 세율은 본 조례에 첨부된《톤세 세목세율표》에 따라 집행한다.  《톤세 세목세율표》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3조** 톤세는 우대세율과 보통세율을 설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과세대상선박, 선적국(船籍国) (지역)과 중화인민공화국 상호 선박세비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된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 과세대상선박은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기타 과세대상선박은 보통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톤세는 선박의 순톤수와 톤세집조(톤세종사자격증) 기한에 따라 징수한다.  과세대상선박의 책임자는 매 회 신고납부 시,《톤세 세목세율표》에 따라 1종 기한의 톤세종사자격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톤세의 납부세액은 선박 순톤수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6조** 톤세는 해관이 징수를 책임진다. 해관은 톤세를 징수할 경우, 납부증빙을 발급해야 한다.  과세대상선박 책임자가 톤세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 해관은 해당 책임지가 신청한 허가증 기한에 따라 톤세집조를 발급한다.  **제7조** 과세대상선박이 항구에 진입하여 입경수속을 처리할 경우, 해관에 신고납세 및 톤세집조를 수령하거나, 톤세집조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대상선박 책임자는 톤세집조를 신청할 경우, 해관에 아래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또는 해사부문이 발급한 선박국적증서 보존증명  (2) 선박톤수 증명  **제8조** 톤세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과세대상선박이 항구에 진입한 당일로 한다.  과세대상선박이 톤세집조 만기 후 항구에서 출항하지 않은 경우, 신규 톤세집조를 신청하고, 1차 톤세집조 기한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톤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 다음의 선박은 톤세를 면제한다.  (1) 납부할 세액이 인민폐 50위안 이하인 선박  (2) 경외에서 구매, 수령, 상속 등 방식으로 선박소유권을 취득하고 처음 수입하여 항구에 도착한 공적(空载)선박  (3) 톤세집조 만기 후 24시간 내에 여객 및 화물의 승하차 업무가 발생하지 않은 선박  (4) 비기동선박(비기동 바지선(barge boat) 불포함)  (5) 어선, 양식어선  (6) 피난, 방역격리, 수리, 운용종료 또는 해체되거나 여객 및 화물의 승하차 업무가 발생하지 않은 선박  (7) 군대, 무장경찰부대 전용 또는 징용 선박  (8)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해야 할 주중외국대사관, 국제조직의 주중대표기구 및 그 유관인원의 선박  (9)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선박  **제10조** 톤세집조 기한 내에 과세대상선박이 아래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해관은 실제 발생한 일수에 따라 톤세집조 기한의 연장을 비준한다.  (1) 피난, 방역격리, 수리, 여객 및 화물의 승하차 업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군대, 무장경찰부대의 징용  과세대상선박이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해관지점이 설립되지 않은 곳에 정박한 경우, 선박책임자는 즉시 부근에 있는 해관에 보고해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원인이 해소된 후에는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관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제11조** 본 조례 제9조 제5항부터 제8항, 제10조 규정에 부합하는 선박은 해사부문, 어업선박관리부문 또는 위생검역부문 등 부문, 기구가 발급한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문건 또는 사용관계증명 문건을 제출해야 하며, 면세 또는 톤세집조 기한의 연장 근거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과세대상선박 책임자는 해관이 톤세납부 증빙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내에 지정은행에 세금을 납부완료 해야 한다.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완료하지 않은 경우, 세액체납일부터 하루 당 체납세액의 0.5%에 따라 체납금을 추가징수 한다.  **제13조** 과세대상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해관의 비준을 취득하고 선행신고 및 출입경 수속을 처리완료한 경우, 과세대상선박 책임자는 해관에 법에 따른 톤세 납세의무 이행과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과세대상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후에는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관에 신고납부 한다.  다음의 재산, 권리는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1) 인민폐, 자유전환가능화폐  (2) 환어음,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3) 은행, 비은행 금융기구의 보증서  (4) 해관이 법에 의거하여 인가한 기타 재산, 권리  **제14조** 과세대상선박이 톤세집조 기한 내에 수리로 인해 순톤수에 변동이 발생한경우, 톤세집조는 계속 유효하다. 과세대상선박은 출입경수속을 처리할 경우, 선박의 수리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과세대상선박이 톤세집조 기한 내에 세목세율의 조정 또는 선박국적의 변경으로 인해 적용세율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톤세집조는 계속 유효하다.  선박국적의 변경으로 적용세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선박은 출입경수속 처리 시, 선박국적의 변경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톤세집조를 만기 전에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기존 허가증 발급 해관에 톤세집조 부분의 발급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더 이상 보세(补税)하지 않는다.  **제17조** 해관이 세금의 과소징수 또는 징수누락을 발견할 경우, 과세대상선박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세금을 추가징수 해야 한다. 단, 과세대상선박이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의 과소징수 또는 징수누락이 초래된 경우, 해관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하루 당 과소징수 또는 징수누락세액의 0.5%에 따라 체납금을 가산징수한다.  해관이 과다징수세액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과세대상선박의 환급수속 처리를 통지하고, 은행의 동기 당좌예금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과세대상선박이 초과납부세액을 발견한 경우, 세금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서면형식으로 해관에 초과납부 한 세금을 환급하고, 은행의 동기 당좌예금 이자를 가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관은 세금환급신청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사하여 확인하고, 과세대상선박의 환급수속을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과세대상선박은 본 조례 제2관, 제3관에서 규정한 통지를 수취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관 환급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과세대상선박이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관은 기한 내 개정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할 경우, 미납 또는 과소납부 한 세액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벌금은 2,000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않고, 톤세집조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톤세집조 및 기타 증명문건을 검증 받지 않은 경우  **제19조** 톤세세액, 체납금, 벌금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제20조** 본 조례의 용어는 아래 의미를 포함한다.  순톤수란 선적국(지역) 정부가 수권하여 발급한 선박톤수증명서 상에 명시된 순톤수를 말한다.  비기동선박이란 자체적인 동력장치 없이, 외부 힘에 의해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비기동 바지선이란 선박관리부분에 바지선으로 등기된 비기동선박을 말한다.  어선, 양식어선이란 중화인문공화국 어업선박관리부문에 어선 또는 양식어선으로 등기된 선박을 말한다.  예인선이란 운송선의 예인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작업선박을 말한다. 예인선은 엔진동력에 따라 1kw 당 순톤수 0.67톤으로 환산한다.  톤세종사증명서 기한이란 양력년, 양력일에 따라 계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21조** 본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1952년 9월 16일 정무원 재정경제위원회가 비준, 1952년 9월 29일 해관총서가 발표한《중화인민공화국 해관선박톤세 잠행방법》은 폐지한다.  **첨부 :**  **톤세 세목세율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목 （선박 순톤수에 따라 구분） | 세율 (위안/NT) | | | | | | 비 고 | | 보통세율 　（톤세집조 기한에 따라 구분） | | | 우대세율 （톤세집조 기한에 따라 구분） | | | | 1년 | 90일 | 30일 | 1년 | 90일 | 30일 | | 2,000NT 이하 | 12.6 | 4.2 | 2.1 | 9.0 | 3.0 | 1.5 | 예인선과 비기동 바지선은 각각 동일한 순톤수 선박세율의 50%에 따라 과세 | | 2,000NT이상, 10,000NT이하 | 24.0 | 8.0 | 4.0 | 17.4 | 5.8 | 2.9 | | 10,000NT이상, 50,000NT이하 | 27.6 | 9.2 | 4.6 | 19.8 | 6.6 | 3.3 | | 50,000NT 이상 | 31.8 | 10.6 | 5.3 | 22.8 | 7.6 | 3.8 | |  | **中华人民共和国船舶吨税**  **暂行条例**  国务院令第610号  　　《中华人民共和国船舶吨税暂行条例》已经2011年11月23日国务院第182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1月1日起施行。  　　　　　　　　　　　　　　　　　　　　　　　 　 总理　 温家宝　　　　　　　　　　　　　　　　　　　　　　 　二○一一年十二月五日  **第一条**　自中华人民共和国境外港口进入境内港口的船舶（以下称应税船舶），应当依照本条例缴纳船舶吨税（以下简称吨税）。  **第二条**　吨税的税目、税率依照本条例所附的《吨税税目税率表》执行。  　　《吨税税目税率表》的调整，由国务院决定。  **第三条**　吨税设置优惠税率和普通税率。  　　中华人民共和国籍的应税船舶，船籍国（地区）与中华人民共和国签订含有相互给予船舶税费最惠国待遇条款的条约或者协定的应税船舶，适用优惠税率。  　　其他应税船舶，适用普通税率。  **第四条**　吨税按照船舶净吨位和吨税执照期限征收。  　　应税船舶负责人在每次申报纳税时，可以按照《吨税税目税率表》选择申领一种期限的吨税执照。  **第五条**　吨税的应纳税额按照船舶净吨位乘以适用税率计算。  **第六条**　吨税由海关负责征收。海关征收吨税应当制发缴款凭证。  　　应税船舶负责人缴纳吨税或者提供担保后，海关按照其申领的执照期限填发吨税执照。  **第七条**　应税船舶在进入港口办理入境手续时，应当向海关申报纳税领取吨税执照，或者交验吨税执照。应税船舶在离开港  口办理出境手续时，应当交验吨税执照。  　　应税船舶负责人申领吨税执照时，应当向海关提供下列文件：  　　（一）船舶国籍证书或者海事部门签发的船舶国籍证书收存证明；  　　（二）船舶吨位证明。  **第八条**　吨税纳税义务发生时间为应税船舶进入港口的当日。  　　应税船舶在吨税执照期满后尚未离开港口的，应当申领新的吨税执照，自上一次执照期满的次日起续缴吨税。  **第九条**　下列船舶免征吨税：  　　（一）应纳税额在人民币50元以下的船舶；  　　（二）自境外以购买、受赠、继承等方式取得船舶所有权的初次进口到港的空载船舶；  　　（三）吨税执照期满后24小时内不上下客货的船舶；  　　（四）非机动船舶（不包括非机动驳船）；  　　（五）捕捞、养殖渔船；  　　（六）避难、防疫隔离、修理、终止运营或者拆解，并不上下客货的船舶；  　　（七）军队、武装警察部队专用或者征用的船舶；  　　（八）依照法律规定应当予以免税的外国驻华使领馆、国际组织驻华代表机构及其有关人员的船舶；  　　（九）国务院规定的其他船舶。  **第十条**　在吨税执照期限内，应税船舶发生下列情形之一的，海关按照实际发生的天数批注延长吨税执照期限：  　　（一）避难、防疫隔离、修理，并不上下客货；  　　（二）军队、武装警察部队征用。  　　应税船舶因不可抗力在未设立海关地点停泊的，船舶负责人应当立即向附近海关报告，并在不可抗力原因消除后，依照本条例规定向海关申报纳税。  **第十一条**　符合本条例第九条第五项至第八项、第十条规定的船舶，应当提供海事部门、渔业船舶管理部门或者卫生检疫部门等部门、机构出具的具有法律效力的证明文件或者使用关系证明文件，申明免税或者延长吨税执照期限的依据和理由。  **第十二条**　应税船舶负责人应当自海关填发吨税缴款凭证之日起15日内向指定银行缴清税款。未按期缴清税款的，自滞纳税款之日起，按日加收滞纳税款0.5‰的滞纳金。  **第十三条**　应税船舶到达港口前，经海关核准先行申报并办结出入境手续的，应税船舶负责人应当向海关提供与其依法履行吨税缴纳义务相适应的担保；应税船舶到达港口后，依照本条例规定向海关申报纳税。  　　下列财产、权利可以用于担保：  　　（一）人民币、可自由兑换货币；  　　（二）汇票、本票、支票、债券、存单；  　　（三）银行、非银行金融机构的保函；  　　（四）海关依法认可的其他财产、权利。  **第十四条**　应税船舶在吨税执照期限内，因修理导致净吨位变化的，吨税执照继续有效。应税船舶办理出入境手续时，应当提供船舶经过修理的证明文件。  **第十五条**　应税船舶在吨税执照期限内，因税目税率调整或者船籍改变而导致适用税率变化的，吨税执照继续有效。  　　因船籍改变而导致适用税率变化的，应税船舶在办理出入境手续时，应当提供船籍改变的证明文件。  **第十六条**　吨税执照在期满前毁损或者遗失的，应当向原发照海关书面申请核发吨税执照副本，不再补税。  **第十七条**　海关发现少征或者漏征税款的，应当自应税船舶应当缴纳税款之日起1年内，补征税款。但因应税船舶违反规定造成少征或者漏征税款的，海关可以自应当缴纳税款之日起3年内追征税款，并自应当缴纳税款之日起按日加征少征或者漏征税款0.5‰的滞纳金。  　　海关发现多征税款的，应当立即通知应税船舶办理退还手续，并加算银行同期活期存款利息。  　　应税船舶发现多缴税款的，可以自缴纳税款之日起1年内以书面形式要求海关退还多缴的税款并加算银行同期活期存款利息；海关应当自受理退税申请之日起30日内查实并通知应税船舶办理退还手续。  　　应税船舶应当自收到本条第二款、第三款规定的通知之日起3个月内办理有关退还手续。  **第十八条**　应税船舶有下列行为之一的，由海关责令限期改正，处2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不缴或者少缴应纳税款的，处不缴或者少缴税款50%以上5倍以下的罚款，但罚款不得低于2000元：  　　（一）未按照规定申报纳税、领取吨税执照的；  　　（二）未按照规定交验吨税执照及其他证明文件的。  **第十九条**　吨税税款、滞纳金、罚款以人民币计算。  **第二十条**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净吨位，是指由船籍国（地区）政府授权签发的船舶吨位证明书上标明的净吨位。  　　非机动船舶，是指自身没有动力装置，依靠外力驱动的船舶。  　　非机动驳船，是指在船舶管理部门登记为驳船的非机动船舶。  　　捕捞、养殖渔船，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管理部门登记为捕捞船或者养殖船的船舶。  　　拖船，是指专门用于拖（推）动运输船舶的专业作业船舶。拖船按照发动机功率每1千瓦折合净吨位0.67吨。  　　吨税执照期限，是指按照公历年、日计算的期间。  **第二十一条**　本条例自2012年1月1日起施行。1952年9月16日政务院财政经济委员会批准、1952年9月29日海关总署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船舶吨税暂行办法》同时废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附：**  **吨税税目税率表**   |  |  |  |  |  |  |  |  | | --- | --- | --- | --- | --- | --- | --- | --- | | 税　目 （按船舶净吨位划分） | 税　率（元/净吨） | | | | | | 备　注 | | 普通税率 （按执照期限划分） | | | 优惠税率 （按执照期限划分） | | | | 1年 | 90日 | 30日 | 1年 | 90日 | 30日 | | 不超过2000净吨 | 12.6 | 4.2 | 2.1 | 9.0 | 3.0 | 1.5 | 拖船和非机动驳船分别按相同净吨位船舶税率的50%计征税款 | | 超过2000净吨，但不超过10000净吨 | 24.0 | 8.0 | 4.0 | 17.4 | 5.8 | 2.9 | | 超过10000净吨，但不超过50000净吨 | 27.6 | 9.2 | 4.6 | 19.8 | 6.6 | 3.3 | | 超过50000净吨 | 31.8 | 10.6 | 5.3 | 22.8 | 7.6 | 3.8 | | |